

고향사랑기부제의 현황과 활성화 과제

이상범¹⁾



목차

I.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금법 제도의 현황과 일본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활성화 과제를 제언하고자 함

II. 고향사랑기부금제 경과와 주요 내용

-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0대 국정과제에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포함시키면서 본격 논의가 진전됨
- 2021년 10월 제21대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법이 통과되고,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임
- 첫째, 도입 목적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 둘째, 기부자 : 본인 주소지 외 모든 자치단체 가능, 법인은 기부 불가
- 셋째, 기부금 상한액 : 개인 연간한도액 500만원 및 자치단체 모금한도액 없음
- 넷째, 답례품 증정 : 조례로 정하여 기부액의 30%까지 가능
- 다섯째, 기부금 운용 : 기금 설치하여 주민복지 증진 등에 사용해야 하며, 기금액의 15%이내에서 운용비용 충당
- 여섯째,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부터 16.5%를 세액공제

III. 일본 고향납세 제도의 성공경험

1. 재난재해에 대한 기부금의 증가
2.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및 절차간소화 등 제도개선
3. 답례품 제공에 따른 기부금액 증가

IV.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쟁점

1. 기부금 사용 자율성 확대 : 자치단체 자율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2. 기부금 세액공제액 규모 : 제도 활성화 위해 상향조정 필요 (20만원 이상)
3. 답례품 제공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40%로 상향조정 필요

V. 맺는 글 : 활성화 과제

- 첫째, 명확한 정책목표의 설정
- 둘째, 조례를 통한 투명한 사업 운영 및 지역 현안사업 발굴
- 셋째, 기금재원에 대한 일반회계의 지원 고려



I 들어가는 글

-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고향에 대한 의미부여를 통한 기부문화의 장려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됨
 - 특히, 수도권으로 인구유출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 그리고 지역활력의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돌파구로서 모색됨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과제 일환으로 (가칭)「고향사랑 기부제법」 시행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법제화 움직임이 시작됨
- 이후 2021년 10월 제21대 국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을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고향세)」 제도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선 및 보완하여 만든 제도임(이상범, 2021)
- 일본은 2000년 「지방분권일괄추진법」을 시행하여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관계를 설정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3조엔 규모를 국세(소득세)에서 지방세(주민세)로 이양하는 ‘삼위일체개혁’을 추진
 - 이로 인해, 일본은 세원이양에 따른 지역 간 세수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의 개선 방안 중 하나로 2008년 지방세법 제37조의 2(기부금세액공제)를 신설하여 「후루사토 납세(故郷税)」 도입을 추진
- 한편,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정치자금기부금제와 지역사랑상품권제가 합쳐진 독특한 제도로 운영됨
 - 정치자금법에서 기부금 10만원은 소득세 신고시 10만원을 공제받는데,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역시 10만원을 돌려받으며 추가로 지방정부가 3만원 이하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어 기부자는 최대 13만원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음
- 이러한 혜택으로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기부문화의 장려와 함께 기부금 유치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 맞춤형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답례품의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기대됨
 - 일본의 제도 시행 경험이 우리나라 제도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친 것같이 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역시 일본의 경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금법 제도의 현황과 일본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활성화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II 고향사랑기부금제 경과와 주요 내용

1.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논의 경과

-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논의는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대선공약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음
- 당시 공약사항은 FTA로부터 피해를 입는 농업·농촌·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에 보내자는 내용의 고향세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으며(염명배, 2017), 이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최초로 형성됨
- 2010년 4월 당시 한나라당이 ‘향토발전세(고향세)’의 신설을 6.2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음
 - 공약의 주요사항은 출향민이 고향(출생지) 또는 5년 이상 거주했던 다른 지역에 주민세소득할 (현재의 지방소득세)의 30% 이내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었음
 - 고향발전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지방소득세)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돕는 이른바 ‘zero-sum’ 게임 법칙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심화나 고향세 과열 유치경쟁(지방세 쟁탈전)의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에 따른 반발로 인해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되지 못하였음
- 고향사랑기부제 논의는 그 이후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과 통합민주당 홍재형 의원이 각각 고향세 관련 입법안을 발의하면서 제기되었음
 - 이주영의원 입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방재정법에 고향투자기부금 제도 도입 및 고향투자기부금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이었음
 - 홍재형의원 입법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수도권 거주자(서울·경기·인천지역)가 납부할 소득세의 10% 한도 내에서 본인이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수도권은 제외)의 세입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었음(이상범 외, 2018)
- 20대 국회에 이르러서 황주홍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각각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음

-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이 포함되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본격 논의가 진전됨
- 2021년 10월 제21대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법이 통과되고,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임

2.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주요내용

-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도입 목적임
 -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둘째, 기부자에 대한 정의임
 - 기부금은 해당 자치단체 이외의 주민을 통한 모금으로 규정함에 따라, 기부자는 본인의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며, 법인은 기부가 불가함
- 셋째, 기부금의 상한액임
 -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 강제모집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개인 기부금 연간한도액은 500만원이고 자치단체 모금한도액은 규정하지 않음
- 넷째, 답례품 증정임
 - 고향사랑기부금제는 답례품의 제공이 가능하며, 답례품은 관할구역내 지역상품권 등 기타 조례로 정하여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현금, 고가 귀금속 등은 제외하고 상한선을 기부액의 30%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동법 시행령 제5조).
- 다섯째, 기부금의 운용임
 - 고향사랑기부금은 관련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지 증진 등에 사용해야 하며, 기금액의 15%이내의 범위에서 운용비용을 충당할 수 있음
- 여섯째, 기부금 세액공제임
 -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부터 16.5%를 세액공제함
 - 예를 들면, 100만원 기부시 10만원을 세액공제하고 90만원의 16.5%를 세액공제하여 총 24.8만원이 공제됨(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표 1〉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주요 내용

조항	주요내용	비고
제1조 목적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 발전에 이바지	지역경제 활성화
제2조 정의	• ‘고향사랑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함 •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함	기부자의 거주지 지방정부 제외
제3조 타법률관계	•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접수·사용 등에 관해 ‘기부금법’ 적용 제외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제4조 기부금의 모금주체·대상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음 • 제한가능사항: 고향사랑기부금의 강요 또는 적극적 권유·독려한 경우	기부금강요·적극적인 권유·독려 제한
제6조 기부·모금강요등 금지	•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해서는 안됨 •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해서는 안됨	기부금 강요 금지, 공무원에게 강요·적극적 권유·독려 금지
제7조 모금방법	•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 모금 가능 • 개별전화, 서신, 전자전송 매체, 호별방문, 사적모임(향우회, 동창회)등을 통한 권유와 독려는 불가함 • 모금의 방법·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개별 전화·전송·향우회·동창회등 권유·독려 불가함
제8조 접수·상한액	•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 신용카드 또는 전자자금이체 및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해야 함 • 단체장명의 영수증 발급 • 개인별 기부금의 연간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함	영수증발급, 개인 연간기부금 상한액 500만원
제9조 답례품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음 • 답례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내 지역 상품권 등, 기타 조례에 의한 것을 제공할 수 있음 •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등은 제외됨	답례품 제공 가능
제11조 기금의 설치	•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함 •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해야 함	기금설치 및 복리증진사업

III 일본 고향납세 제도의 성공경험

- 일본의 고향세 납세제도는 명칭이 납세이나 실제로는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임
-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벤치마킹한 제도이므로 일본의 성공경험이 중요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이상범 외, 2018; 이상범, 2021).
 - 첫째, 재난재해에 대한 기부금의 증가임
 - 일본 고향세의 기부금 증가를 보면, 2011년의 동일본 재해에 따라 기부금액이 대폭 증가함
 -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시구정촌)에 대하여 기부한 금액은 2008년 8,139백만엔, 2010년 10,217백만엔 이었으나, 2011년 동일본 재해 때 12,162백만엔으로 크게 증가
 - 둘째,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및 절차간소화 등 제도개선임
 - 2015년 고향납세 공제액의 2배 확대 및 원스톱특례제도를 시행하는 등 제도적 개선에 따라 크게 증가함
 - 2014년 기부금액은 38,852백만엔에서 2015년 165,291백만엔으로 대폭 증가
 - 2021년 기준 기부건수는 4,447만건, 납세금액은 830,240백만엔 임(이현우·이학연, 2022)

〈표 2〉 일본 고향납세 제도 경과

연도	주요내용
2008	고향세 납세제도 도입
2009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최초 실시
2011	동일본 재해에 따른 기부금 증가
	납세자 자비부담금을 5,000엔에서 2,000엔으로 인하
2015	고향세 특례공제 상한액을 주민세 소득할액의 10%에서 20%로 인상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 도입 : 정기급여자의 확정신고서 제출 생략
2016	지방창생응원세제 도입(기업판 고향납세)
2019	고향납세 지정제도 신설 : 고향납세 지정기준 및 지방세법 상 지정기준 신설

출처: 신승근·조경희(2022) 참고작성.

- 셋째, 답례품 제공에 따른 기부금액 증가임
 - 고향납세의 증가 요인에 대한 2017년 일본 총무성(2018)의 지자체(총 1,788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답례품의 충실’ 1,021단체(57.1%), ‘고향납세의 보급 정착’ 1,020단체(57.0%), ‘세수납부환경의 정비(신용카드납부, 전자신청)’ 747단체(41.8%) 등의 응답을 보임
- 이중 ‘답례품 충실’의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일본 고향납세의 증가요인으로 기부금에 대한 반대급부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함

〈표 3〉 일본 고향 납세의 증가요인 (단위: 단체수, %)

고향세 증가 이유	2016년	2017년
답례품의 충실	1,017지자체(56.9%)	1,021지자체(57.1%)
고향세의 보급, 정착	999지자체(55.9%)	1,020지자체(57.0%)
세수납부환경의 정비 (신용카드납부, 전자신청)	766지자체(42.8%)	747지자체(41.8%)
홈페이지 등 홍보의 충실	588지자체(32.9%)	580지자체(32.4%)
납세자 친화적인 세수행정 (원스톱 특례 제도 등)	791지자체(44.2%)	538지자체(30.1%)
사용처, 사업내용의 충실	122지자체(6.8%)	169지자체(9.5%)
지진재해 지원	42지자체(2.3%)	90지자체(5%)

출처: 日本 総務省,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 각 연도.

IV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쟁점

1. 기부금 사용 자율성 확대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 제2항은 기금의 모집비용(전년도 기부액의 15%)외의 재원은 법에 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어있음
- 즉,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등 주민복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사용목적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사용목적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모금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음(이상범, 2021)
 - 예를 들면 일본 규주시(九州市)는 ‘거버먼트 크라우드 펀딩’을 만들어 지역투자사업을 추진함

2. 기부금 세액 공제액 규모 확대 필요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기부금을 연간 최대 500만원으로 정하고(법 제8조), 10만원까지 전액(100%) 세액공제하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기부자가 자기부담금(2,000엔)을 제외한 기부금의 20% 수준을 국세와 지방세 환급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 방식임
 -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국세와 지방세로부터 기부금의 일부만 환급될 뿐 나머지 기부액의 상당 부분을 기부자 자신이 개인부담해야 하는 부분공제 방식의 차이가 있음
- 일본은 세액공제제도 확대와 간편한 세액신고 특례절차로 인해 고향납세액이 대폭 증가한 경험이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부금 세액공제액 규모를 2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이상범, 2021)

3. 답례품 제공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기유인 미흡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기부자의 기부에 대한 보답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9조)
- 답례품은 현금, 귀금속 및 보석류를 제외하고 해당 자치단체 내 생산 물품, 해당 자치단체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등, 이외 조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답례품 지급규모는 기부금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법 제1조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 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40%로 답례품 지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일본의 경우 고향납세 제도 활성화에 가장 큰 동기요인으로 지역특산품과 세금공제 혜택을 들고 있음(이상범, 2021)
 - 일본에서 답례품 지급 과열현상으로 2017년 총무성에서 30% 지급 한도를 권고한 바 있으나, 강행규정이 아니라 권고 규정임
 - 기부자에 대한 지역특산품 지급이 일본의 고향세 제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였고,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것을 보았을 때, 답례품 지급 규모를 확대(40% 수준)하는 것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상범·류영아, 2018)

V 맺는 글 : 활성화 과제

-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음(이상범, 2022)
- 첫째, 명확한 정책목표의 설정임
 - 예를 들면 지방정부에서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통한 기부금의 모집은 우선적으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코로나 19 팬데믹에 의한 지역경제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촉매제로서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임
 - 이러한 목표설정은 기부자에게 지급하는 답례품에 대해 지역내 존재하는 다양한 향토산업 또는 전통산업을 활성화시켜 내고장의 홍보 및 관광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골목상권의 수익증대와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조례를 통한 투명한 사업 운영 및 지역 현안사업 발굴임
 -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를 의무화(법 제11조)하고 있으며, 조례로 이를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고향사랑기금의 지원사업은 ①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②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전 등의 증진 ③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④그 밖에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추진으로 규정
 - 이러한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원사업 공개, 기부자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일정 경과보고, 사업성과보고 등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주민복리를 위한 지역현안 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지역 산업 생산·제조 물품의 유통·판로·마케팅사업, 지역특산물 발굴 판매 유통 개선사업, 지역 전통수공업 향토산업 지원(육성, 생산, 판로개척)사업, 지역내 재난재해 복구사업, 지역내 환경보전, 관광, 문화, 스포츠, 교류·연계사업 등을 들 수 있음
- 셋째, 기금재원에 대한 일반회계의 지원 고려임
 -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의 조세부담외에 기부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써, 결과적으로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개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임
 - 또한 지방정부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기부자의 기부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원칙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해 모집된 기부금에 지방재정 매칭을 하게 되면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재정 재원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면, 기금의 재원은 기부금 모집액 50%와 일반회계 50%로 마련하여 지역활성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기부자(국민),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해당지역 주민, 답례품 생산자, 중앙정부, 지방의회 등이 그 작동에 있어 상호작용을 하면서 운영되고 발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실제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참여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
 - 즉, 지방소멸위기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 발전 방안을 추진하는 것임
 - 예를 들면 자치단체에서는 관계 인구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세액공제 규모를 20만원 이상으로 늘리고, 답례품의 제공한도 역시 4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이제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 앞으로 이 제도가 지역을 살리는 지역발전 정책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함

[참고문헌]

- 신승근·조경희(2022).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 농민신문사.
- 염명배(2017). 우리나라의 고향세제도 법제화 논의와 쟁점사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2(3). 27-77.
- 이상범 외(201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 구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재정. 299-342.
- 이상범(2021).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대응 및 발전방안. 공공정책 vol 194.
- 이상범(2022).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과제. 자치발전 vol 330.
- 이상범·류영아(2018).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방안: 입법현황 중심.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 발전 세미나 자료집.
- 이현우·이학연(2022). 의정부시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방안. 경인행정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 日本 総務省,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 각 연도.

